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96
----------	-----------

제안년월일 : 2000년 9월 1일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한철

1. 수정이유

- 조례 제정안에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의 항이나 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없어 인용법령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 관련법령 문구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동 조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법 제19조제3항의 내용인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는 문구를 삽입함.
(안 제8조제1항제7호)
- 법 제20조제3항 내용인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는 문구를 삽입함.
(안 제8조제1항제8호)
- 법 제49조제2항제3호 내용인 “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의 문구를 삽입함.(안 제20조제1항제2호)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9조제3항(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법 제20조제3항(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

안 제20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및 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및 절차 등) ① ----- ----- -----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7. <u>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u>	7. <u>법 제19조제3항(도시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u>
8. <u>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u>	8. <u>법 제20조제3항(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u>
9. (생 략)	9. (제정안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3년의 기간 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 ----- ----- -----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u>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u>	2. <u>법 제49조제2항제3호(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u>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